

社團法人 土木構造技術士會  
定 款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 칭)

본 회는 사단법인 토목구조기술사회라 칭한다. ( 영문으로는 Korean Professional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-KPSEA로 표기한다. )

제 2 조 (목 적)

본 회는 토목구조기술사의 사명과 역할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토목구조분야의 기술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건전한 사회발전, 회원의 기술향상 및 권리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사 업)
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토목구조 분야의 기술향상 및 선진화를 위한 기획, 조사, 연구,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교환
2. 토목구조 분야에 대한 정부,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위탁업무 협조, 산업기술지도
3. 토목구조기술사 및 관련기술자의 직무수행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, 기술지도, 신기술 보급
4. 토목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감리등에 관한 연구.
5. 토목구조기술사 및 관련기술자의 기술향상과 권리신장을 위한 각종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활동
6. 토목구조 분야의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
7. 토목구조 분야의 자격시험에 대한 의견개진 및 시험문제 출제에 대한 협조
8.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
9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

## 제 2 장 회 원

### 제 5 조 (회원)
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다음 각호와 같다.

#### 1. (정회원)

기술사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구조기술사로서 본회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.

#### 2. (준회원)

대학에서 토목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토목구조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.

#### 3. (특별회원)

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본 회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.

#### 4. (명예회원)

본 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또는 토목구조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탁월하여 모범이 되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 회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.

### 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정회원은 본 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각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
2. 정회원은 정기총회,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.

3. 정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에 대한 참여와 본 법인이 주관하는 연구발표회, 기술세미나, 심포지엄 및 견학시찰 등의 행사에 참가, 발의할 수 있다.

②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

2. 본 회의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회원 상호간에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

3. 회비를 납부할 의무

### 제 7 조 (회원의 입회 및 탈퇴)

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을 갖춘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소정의 입회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후 탈퇴할 수 있다.

### 제 8 조 (자격정지 및 회복)

① 해당 법령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 회복의 경우에도 같다.

② 회원의 재정적 의무(회비납부)이행에 따른 자격정지 및 회복은 별도의 운영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### 제 9 조 (회원의 포상)

본 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산업기술발달 또는 기술향상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을 수 있다.

### 제 10 조 (회원의 징계 및 제명)

본 회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거나 명예 또는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징계여부를 검토하고, 이사회에 상정 및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의 일시정지 등의 징계, 또는 제명 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임 원

### 제 11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원)

- ① 회장 - 1인
- ② 부회장 - 5인이내
- ③ 이사 -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
- ④ 감사 - 2인

### 제 12 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•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
### 제 13 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을 하고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현임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
- ② 회장,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이를 제외한 이사는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### 제 14 조 (임원선출)

-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③ 이사는 회장, 부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### 제 15 조 (임원의 보선)

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선한다.

1.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한다.
2. 감사의 보선은 2인 모두가 결원일 경우에만 한다.
3. 부회장과 이사의 보선은 제 15조와 같다.

### 제 16 조 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또는 권위가 있을 때에는 연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3. 제1호,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·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

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

## 제 4 장 회 의

### 제 17 조 (회의의 종류)

본회의 회의는 총회, 이사회로 한다.

### 제 18 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 19 조 (총회개최방법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, 임시 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총회 참석장을 송달하고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절하게 공고하여야 한다.

## 제 20 조 (총회의결방법)

- ① 총회는 참석회원에게만 의결권이 부여되며 투표 및 의결방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- ② 참석회원 및 위임장으로 위임한 회원을 참여인원으로 규정하며 참여인원은 전체 회원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총회가 성립될 수 있다.
- ③ 의안 결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.
- ④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.

제 21 조 (임시총회의 소집) 총회소집권자(회장 또는 대리인)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회원 1/5 이상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
2. 임원 1/3 이상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
3. 제19조 ②항 규정에 위배되어 총회가 무산된 때

## 제 22 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회장단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.
2.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에 대한 인준.
3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.
4.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.
5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.
6. 이사회에서 총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사항.
7.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.
8.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.

## 제 23 조 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회장, 부회장, 위원장, 이사
2. 감사 2인(단. 의결권은 없음)

## 제 24 조 (의결 참여의 배제)

이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.
2. 금전 또는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.

### 제 25 조 (이사회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되 정기 이사회는 본 회의 1회계년도 중 2개 월마다 1회씩,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회의개시 7일전에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.

### 제 26 조 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### 제 27 조 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운영과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.
2. 정관개정안의 작성과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.
3. 지회 또는 위원회 설치승인 관한 사항
4. 회원의 징계판정 및 입, 탈퇴에 대한 세부사항
5. 회원의 회비금액 결정사항
6.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총회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.

## 제 5 장 조 직

### 제 28 조 (각 위원회)

- ① 본 회에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조정 또는 증감 할 수 있다.
1. 총무위원회
  2. 기획위원회
  3. 홍보위원회
  4. 기술위원회
  5. 편집위원회
  6. 사업위원회
  7. 대외협력위원회
  8. 제도개선위원회
  9. 윤리위원회
  10. 재정위원회

- ②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회의 업무는 운영세칙에 따르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각 위원회는 이사회 및 총회를 보좌한다.

#### 제 29 조 (사무국)

-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,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  - 1. 사무국장 : 1명
  - 2. 사무보조 : 1명
- ②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 6 장 회 계

#### 제 30 조 (회계단위)

- ① 회계단위는 정관 제 2 조의 목적사업에 관한 일반회계와 그 이외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특별회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.

#### 제 31 조 (재정)

-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1. 회원의 입회비, 연회비 및 종신회비
  - 2. 연구 또는 안전진단 용역 수입금
  - 3. 회원의 특별기부금과 기타부담금
  - 4. 본회 발행 기술정보지등의 광고료 및 기타 수입금
  - 5. 기타

#### 제 32 조 (회비세칙)

입회비와 회비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 단, 탈퇴, 제명, 자격정지 또는 취소 회원의 기 납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#### 제 33 조 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# 제 34 조 (사업계획 및 예산)

본회의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 35 조 (사업실적 및 결산)

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,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매 사업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 7 장 보 칙

### 제 36 조 (회무운영)

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과 회무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운영세칙을 정하고 사무책임자와 사무직원을 두어 회무를 처리한다.

### 제 37 조 (해산, 청산)

본회를 해산, 청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38 조 (잔여재산의 처분)

본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
### 제 39 조 (정관변경)

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 40 조 (시행세칙)
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등의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# 제 41 조 (준 용)
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및 「국토해양부장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◎ 한국건축사|공기기술사|회|명장

- The Korean Architectural Constructio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(KACPEA)
- The Korean Architectural Construction Professional Engineers Institute(KACPEI)

## ◎ 한국산업관리공단

- Korean Professional Engineer Architectural Execution Association(KPEAEA)

## ◎ 통합의 경우=> 한국어 명칭 확정 후 영문명 작성

명칭변경 필요=>'시공'이라는 단어로 엔지니어링업무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.